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1123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휘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2.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1. 2. 19. 접수 제203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주식회사 C(이하 'C')과 보증금액 10억 원, 보증기한 2015. 4.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자 B은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제6조(사전구상) 제9호는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사전구상권이 발생하는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나. C은 2014. 5.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에서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21. 3. 2. D은행으로부터 C이 같은 날 타행 연체발생 장기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신용보증부실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C의 대출잔액은 12억 5,000만 원이었다.

라. B은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19. 피고에게 2021. 2.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

마. 원고는 2021. 6. 22. D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합계 1,018,475,616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통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권리

원고는 2021. 3. 2. 채권자인 D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부실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에 대한 사전구상권(신용보증원금 10억 원과 이자)을 취득하였다. 비록 이 사건 증여는 그 전에 이루어졌으나, 증여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B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사전구상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C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유가 '타행 연체 발생 장기화'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 무렵에는 이미 다른 은행 대출금채무 연체가 진행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담보되는 2014. 5. 21.자 D은행 대출금도 2021. 1. 27. 후부터는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던 점(갑 제4호증)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C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사전구상권 사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였고 증여일로부터 불과 2주 후 신용보증부실 통지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사전구상권은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공동담보 부족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부동산임을 알 수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20. 3. 1.부터 2020. 12. 31.까지 주식회사 G에서 62,5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만족을 얻기에는 부족한 액수이다. 달리 B의 적극재산에 관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는 더욱 부족해졌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B과 이혼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사전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B은 2019. 10.경 C을 퇴사하고 자기의 회사를 운영하느라 C의 사정은 알 수 없었고, 퇴사시까지 C의 경영 상태가 부실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년경부터는 B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B도 알지 못하는 C의 내부 사정과 대출금 연체사실을 알 수 없었다.

2) B의 사해의사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C에 재직 중이던 2019. 1. 23. C에 대한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중이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한이 2019. 12. 31.에서 2020. 3. 31.까지, 2020. 3. 31.에서 2020. 6. 30.까지, 2020. 6. 30.에서 2020. 9. 29.까지, 2020. 9. 29.부터 2020. 12. 29.까지, 2020. 12. 29.부터 2021. 3. 29.까지 변경될 때마다 B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C의 자금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 발생 가능성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경우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의 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B의 배우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로 B의 유일한 공동담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와 B이 이혼을 앞두고 있었고 피고가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필요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0층 호 84.9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안양시 동안구 대 29770.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9770.6분의 46.024

